

다중이용업소 실내 마감재료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ing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 using Regulation at Multiple-using Businesses

Author 김용성 Kim Yong-Sung / 이사, 가천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조성오 Cho Sung-O / 정회원, 동양미래대학교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There are the relevant provisions that apply to building regulations about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and more Multi-using interior finish materials businesses etc.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regulations are as follows: The Building codes is defined the main us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facilities to used to set the scale by the use of the floor space, On the other hand, Fire Protection laws are the basic purpose and the act of using the architectural space(or sales) by separating object by fire. And Multiple-using Businesses Facilities consist of two regulations engaged in the kind of law and the size of the floor area. One building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together in Multiple use businesses Law. As such, the Buildings are applied to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such as Multi-using Businesses Facilities interior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position of the designer feeling a lot of difficulties and confusion. The Multi-use businesses Facilities engage in the kind of law, the size of the floor area and seating capacity. These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consists of two regulations together in one building. This study is purposed to help improving the finish of the interior architecture that is related to the Building code regulations, Fire Protection laws, Multi-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material relevant with the provisions from the law through analyze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urrent Multiple use Businesses Facilities research range from the law of multiple-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interior architecture for supervision reasonably and compensation for the interior design. So,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terior decorations can be separated the fixed material and the moveable things. second, It should be included multi-using Business though small size business space at the basement floor. third, It should be established statute law that design and construction responsibility. forth, re-testing fire resist performance after some period. and finally, it need to mitigate regulation where be installed sprinkler.

Keywords 실내건축 관련법, 다중이용업소, 실내 마감재료, 재료사용기준
Interior Architecture-related Laws, Multiple-using Businesses,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Material Using Regul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동안 실내건축분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왔 으면서도 실내건축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들에 의 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실 내 마감재와 방염관련 업무에 있어 현장의 제반 여건과 담당 공무원의 관련법규 해석차이로 인해 많은 혼선이 발생하면서 실내건축업계의 불만과 재시공 등의 경제적 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내건축에 적용되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 소법 등에 대한 실내 마감재료 관련기준의 차이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은 영업행위의 종류와 바닥면적 의 규모, 수용인원수, 한 건축물에 함께할 수 없는 영업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또 한 각 관련법에서의 건축용도 분류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무 현장에서는 관련법 적용을 한층 어렵 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의 구조적인 차이 점으로 인하여 실내건축업의 관련자 입장에서는 많은 어 려움과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cho@dongyang.ac.kr

미국의 경우는 빌딩코드(Building Code)의 사용으로 한 건축물에 각 분야의 일관된 법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법체계가 일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합리적인 사용과 효율적인 공간구성 마감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과 관련된 법 규정 운용에 있어서 일관된 법체계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 종사자들에게 법규의 해석에 있어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실내건축분야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내건축에서의 마감재 기준에 관련된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실내마감재 관련법 기준을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에서의 용도 범위와 실내 마감, 실내건축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 설치기준의 개선에 대한 연구로 각각의 실내건축 관련법에서 실내마감재 사용기준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기준의 관련요소 현황을 분석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내재료마감 설치기준에 대한 미비사항 정비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연구의 방법은 실내건축 관련법의 실내마감재 설치기준 관련규정과 문헌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실내마감 관련기준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소방 및 실내마감재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둘째, 실내건축 관련법에 의한 실내마감재료 관련사용기준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실내마감재료의 사용기준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선진외국의 실내마감재료 관련기준을 사례조사하고, 끝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재료 사용에 대한 관련 기준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내용을 제시한다.

<표 1> 선행연구

연구자	발표지	연구제목	연구내용
이주현, 윤명호, 김운형(2001)	한국화학·소방학회	다중이용업소의 내장재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방염처리, 내장재 시험기준개선
박형주, 광동일(2001)	한국화학·소방학회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재에 대한 방화·방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방화방염성능 시험평가
정세진(2006)	건국대학교 대학원	소방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인테리어 개선에 관한 연구	다중이용업소 마감제한규정 개선
김엽래(2009)	한국화학조사학회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에 관한연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조성오, 김용성(20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건축관련 소방규정과 방염에 관한 연구	실내건축 소방 방염
한국실내디자인학회(2010.0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건축관련 소방법규 가이드라인을 위한 조사연구	실내건축관련 소방법규 재만조사

<표 1>선행연구에 의한 결과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소방관련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및 방화, 방염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내건축분야에서는 2010을 기준으로 하여 실내건축에서의 마감재료기준에 의한 연구가 진되고 있다.

2. 다중이용업소

2.1. 다중이용업 및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다중이용이란 용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¹⁾ 관련 기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함)에서 다중이용업을 정의²⁾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내용은 용도별, 면적별, 수용인원별로 불특정 다수인의 건축물 사용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사안을 담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이용공간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창문설치 등의 안전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에 해당하는 실내장식물³⁾에 대한 기준이다.

2.2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의 변천

<표 2>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변천과 내용

제·개정일시	주요내용
2007.3.25 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의 정의,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등
2009.5.15 개정 시행규칙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피난유도선 의무적 설치,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강화
2009.7.8 개정 법, 시행령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신고 의무화 및 실내장식물 설치와 교체 시에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설치 의무화
2010.10.20 개정 시행규칙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에 의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닌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10.11.12 개정 시행령	옥내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로 함,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권총사격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함
2011.12.11. 개정 법	다중이용업주가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 하도록 함
2013.2.23 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및 미비점 개선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 1)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1항 4호)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 제1항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다루어져 오다가, 2007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의 제정 배경에는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소 출현과 대형화, 밀집화 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다중이용업소법 주요변천과 그에 관한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2.3. 실내 마감재료 관련기준

(1) 관련법 기준

건축물의 마감재 관련 기준은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마감재료와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해당 공간의 위치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물(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와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

물 사용재료 원칙과 완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범위이다.

(2) 다중이용업소의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은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점과 근래의 잇따른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따라 다른 어떠한 건축물보다도 가장 안전한 마감재료를 적용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사용재료는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만을 사용하고, 합판이나 목재에 의하여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된 경우에는 5/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염에 의한 것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하고 있다.

3. 다중이용업소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

3.1.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재료

건축물에서의 실내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방시설법에서는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 등 방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실내장식물의 마감재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관련법에 의한 세부적인 마감재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감재료 기준

용도	해당규모	마감재료 적용 *		제외대상
		해당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복도,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 제외)	해당 용도사용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400㎡) 이상인 건축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의 유숙호텔,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장례식장	3층 이상인 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400㎡) 이상인 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의 방송국·촬영소, 발전시설	모든 규모 해당			
공장	모든 규모 해당.(단, 국토부령의 공장용도와 출구·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제외)			
모든 용도	5층 이상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창고	바닥면적 3,000㎡(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600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의 예식장, 초등학교,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의 주점영업,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영업 제외)	모든 규모 해당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이며, 다중이용업법에서의 실내장식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1) 건축법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규정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크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 마감재료로 구분하고 있다. 내부 마감재료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규모, 건축물의 피난규칙에서는 해당 실의 위치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간의 경우는 난연재료까지를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공간사용의 성격(예, 다중이용업), 위치(예, 지하층) 등에 따른 안전성의 확보나 피난에서의 주요한 부위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만을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마감재료의 사용에 대한 기준은 <표 3>과 같다.

(2) 소방시설법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규정

소방시설법에서는 실내마감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특정소방대상물), 해당규모 등에 따라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 등이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다중이용 영업장의 경우에는 실내장식물 재료도 방염이 아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등에서는 이동성 가구인 소파와 의자에 대해서도 방염성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설정이 아닌,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방편에 의한 후속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험등급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준제시가 요구되며, 현재의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⁴⁾은 <표 5>와 같다.

3.2. 외국사례

(1) 미국

미국의 소방규정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를 중심으로 화재관련 코드를 제정하고 화재안전기준으로 예방관련 제반규정, 소화설비, 소방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화재예방 규정은 UBC(Uniform Building Code)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설계·화재예방·피난방법·조명·위생 및 내장마감·소방설비 등 건축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어 주마다 규제방법이 다르며, 연방법규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민간기관의 실험 연구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방염에 있어서도 각 주에서는 제조업체 등이 인정마크의 획득과 마크표시를 하고 있으며, 소방국의 홍보 등을 통해 자체 점검방식의 권장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다.⁵⁾

<표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기준

용도	해당규모	실내설치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의 방송국 및 촬영소	모든 규모 해당	건축물 내부의 천장, 벽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 종이류(2mm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 목재 - 구획 칸막이, 간이 칸막이 - 흡음재, 흡음용 커튼, 방음재, 방음용 커튼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옥내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의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의 합숙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11층 이상	단,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이와 비슷한 것),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다중이용업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모든 규모 해당	너비10cm 이하인 반자물림대, 건축법의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함	상기의 방염대상물품 외에 소파, 의자 추가함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모든 규모 해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3) 다중이용업소법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규정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수용인원, 위치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포함 여부가 구분된다. 다중이용업소의 해당 범위는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에 주로 편제되어 있으며, 규모만이 아니라 수용인원, 영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의 해당 여부를 판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해당규정이 복잡하고, 동일한 영업이라 하더라도 영업장의 위치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르게 되는 혼란스러운 법 규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용도의 범위도 일정한 규정에 의한

1) 미국의 소방관련 규정

미국도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의 경우처럼 화재예방 규정과 건축규정에 포함될 내용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사항은 건축규정에 포함되고, 화재예방 규정은 건축물 내부의 화재위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3조(실내장식물),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
5) Ron Cote, Gregory E. Harrington, Life Safety Code Handbook,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9 (Eleventh Edition), pp.3-4

<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

용도	해당규모	비고	실내장식물		
			실내장식물 범위	사용재료 원칙	사용재료의 완화사항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100㎡ 이상(지하층인 경우 66㎡ 이상)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의 영업은 제외	건축물 내부의 천장, 벽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중이류(2mm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합판, 목재-구획 칸막이, 간이 칸막이-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단,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이와 비슷한 것), 너비10cm 이하인 반자동림대, 건축법의 내부 마감 재료는 제외함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합판,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설치 시 5/10)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영업	모든 규모 해당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모든 규모 해당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학원			
목욕장업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땀을 배출하는 시설의 수용인원(물로 목욕할 수 있는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의 목욕장업 ⁶⁾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모든 규모 해당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의 경우는 제외			
노래연습장업	모든 규모 해당				
산후조리업	모든 규모 해당				
고시원업	모든 규모 해당	구획된 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			
권총사격장	모든 규모 해당	실내사격장에 한정,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됨			
골프 연습장업	모든 규모 해당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안마미술소	모든 규모 해당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모든 규모 해당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수면방업	모든 규모 해당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콜라텍업	모든 규모 해당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로 소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예로서 비상구와 소화장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건축규정에서 다루며,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화재예방 규정에서 다룬다.

미국의 건축규정에서 제시되는 많은 사항들은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공포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인용하고 있다. 또한 참고규정(Reference)은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건축규정에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NFPA 기준이 건축규정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참고 규정들이 인용되는 경우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NFPA 기준에는 전기설비·소화설비·인화성 액체·위험공정·가연성 분진·액화 석유가스 및 화재시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실내마감 장식재와 가구에 대한 규제

소방법으로도 지칭되며, 실내마감 장식재와 가구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IFC(International Fire Code)는 화재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IFC에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폼 플라스틱, 포장가구류, 실내장식재료, 매트리스, 비닐벽지 등이 있다.

방염에 대하여 비교적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건물기준 규정(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 보건안전 규정(Health and Safety Code) 및 주법을 기초로 하여 규정한 시행규칙(Regulation), 기술적인 고시(Technical Bulletins) 등에 의하여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와 규제대상물품에 대한 사항은 <표 6>과 같다.⁷⁾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7) 한국소방감정공사, 방염제도에 관한 연구, 2001.5, pp.129-131 재인용

<표 6> 캘리포니아 주의 건축물 용도와 규제대상물품

구분	건축물의 용도	규제대상물품
주법에서 규정	(1) 수용인원 10인 이상 건축물 극예단, 극장, Side Show, 스케이트 링크, 카니발, 댄스홀, 텐트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사용하는 텐트, 커텐, 텐트 무대막, 포제천막, 장식재료, 부속텐트
	(2) 수용인원 10인 이하의 텐트(판매용)	
	(3) 주류 판매소-나이트클럽, 레스토랑, 카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곳 댄스홀, 학교, 스케이트 링크, 유기장, 극장, 박물관, 영화관, 교습소, 공회장, 전시장	늘어지는 막, 커텐, 무대막 기타 화재 및 극심한 공포(panic)를 증대시키는 장식재료
시행규칙에서 규정		장식용 목재 및 압축 셀룰로오스 섬유, 목피 및 장식재료, 크리스마스 트리 등

(2) 영국

영국은 관습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법체계가 세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대한 구성이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방염에 관한 사항은 산업무역국(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가구포장재·잠옷·장난감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커텐이나 카페트 등은 공업규격(BS)에 준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시험소의 데이터 제시 및 방염표시 등에 의해 방염제품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내장 및 장식용 마감재료(Internal Linings)의 사용규제

실내마감재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사용재료의 표면 화염확산을 기준으로 낮은 화염확산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는 방출열량이 낮은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 하여 실내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성 직물류 재료 등이 화재의 확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화재의 확산과 실내마감재 기준

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 선택은 화재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또한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을 곤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화재 시 실내마감재가 갖는 중요한 2가지 특성인 화염확산도와 연소할 때의 방출열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비교적 연기 발생량이나 그을림에 관해서는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3) 바닥과 계단

바닥과 계단부의 표면재는 화재초기 확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다.

4) 재료의 분류 및 용도별 실내 마감재료의 사용규제

재료의 화염확산시험법에 의한 재료의 등급분류법 기준에 따라 재료가 0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어지며, 0등급이 실내마감재에 있어 최고의 성능을 가진 등급이다.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일반재료의 성능등급은 <표 7>과 같다.

<표 7> 주요재료의 방화등급

등급	재료 및 제품
0등급 불연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블록 및 세라믹타일 ·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모르타르, 회 · 복합재(플라스터 보드(0.5mm 이하의 PVC도장 허용)+후면 기공성 보온 단열재) · 목모시멘트판 · 시멘트 또는 수지(resine)접착 미네랄 타일이나 시트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및 합판으로서 밀도가 400kg/m³ 이상인 것 · 집성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하드보드 · 유리섬유보강 폴리에스테르

또한 실내마감 재료의 사용은 해당 실의 용도와 사용 면적에 따라 재료의 사용등급을 <표 8>과 같이 제한함으로써 실내의 화염확산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⁸⁾⁹⁾

<표 8> 용도와 사용규모별 실내 마감재료의 사용등급

그룹	용도 및 사용면적	재료 사용등급
A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4㎡ 이하인 실 ·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30㎡ 이하인 실 · 창고로서 40㎡ 이하인 실 	3등급 이상
B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4㎡를 초과하는 실 ·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30㎡를 초과하는 실 · 창고로서 40㎡를 초과하는 실 · 주거용도에서의 순환공간 	1등급 이상
C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거용도에서의 순환공간 · 주거용도 중 집합주택에서의 순환공간 	0등급

(3) 일본

1952년에 시작된 일본에서 방염규제는 1962년에는 소방청에서 작성한 화재예방조례준칙에 의하여 방염규제가 전국적으로 법제화 되었고, 이 조례준칙에 근거하여 장식용물품의 방염규제가 조례화 되었다. 1968년 방염규제의 강화와 확충을 시도하여 고층건축물, 지하가 등의 화재예방이 요구되는 방화대상물에서 천막, 커텐 등을 방염처리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확인기관인 방염협회에서 시험하여 방염표시라벨, 품질관리 등 세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

1) 방염대상 장소

소방법에서 정하는 방염대상 건축물은 고층건축물(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하가·극장·영화관·연회장·관람장·공회당 또는 집회장·카바레·커피숍·나이트클럽 등 이와 유사한 장소·유기장 또는 댄스홀·대합실·요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음식점·백화점·마켓 등 물품판매업을 하는 점포 또는 전시장·여관·호텔이나 숙박소·병원·조산소·노인복지시설·유료 노인홈·교양시설·경정시설·아동복지·신체장애자 경정수용시설·정신박약자 수용시설·유아원·특수학교·공중욕장·터어키욕장·사우나욕장 등 이와 유사한 곳·영화

8) RIBA, RIBA Chartered Practice Health and Safety Policy Template, May 2007, pp.24-27

9)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건축관련 소방법규 가이드라인을 위한 조사 연구, 2010.12, pp.90-95 재인용

스튜디오나 텔레비전 스튜디오·플랫폼의 상층·저장소·화학공업제품 제조장치·저장소나 화학공업제품제조장치에 포함되는 것과 유사한 공작물 등이다.10)

2) 방염대상물품

일본에서는 방염성능이 부여된 물품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와 같이 준공 후 현장방염처리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소방서에서 별도로 검사를 나가거나 성능시험을 하지 않는다. 방염물품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방염대상 장소에 쓰여 지는 건축내장재는 모두 제조공정 방염처리 물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건축기준적합 판정자격자에게 확인을 받으면 추후검사는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업무처리가 빠른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염물품의 부실에 따른 법 절차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방염협회에서는 등록제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제품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협회에서의 등록취소와 소방청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아 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표 9>와 같이 법으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방염물품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방염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9> 방염물품과 방염제품

방염물품	방염제품 ¹¹⁾
- 커튼, 암막, 포제브라인드	- 침구류(홀이불, 베드시트, 매트리스, 베개 등)
- 카페트	- 모포류
- 돛자리	- 텐트류, 시트류
- 인조잔디	- 막류
- 합성수지로 된 바닥시트	- 비상지출대
- 전사용합판	- 방재두건
- 무대막, 무대에서 사용하는 대도 구용 합판	- 포장가구
- 공사용 시트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카바
	- 제단

4. 다중이용업소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의 개선점

4.1. 다중이용업소 실내마감재료 기준의 문제점 분석

(1) 복잡한 실내마감 관련규정의 정비

건축물의 실내마감 관련규정은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용도에 따라 규모별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법에 관한 실내마감 규정에서는 해당규모 뿐 아니라 수용인원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실내마감 관련규정 자체가 건축물에 관련되는 여러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적이며, 각각의 관련법

세부규정을 반영하여 적용하게 되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관련법에 분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내마감 관련 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되는 설치기준을 합리성과 단순성, 명료성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0>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 비교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마감재료	구분	실내 장식물 재료	방염대상 물품재료	구분	실내장식재료
일반용도 및 규모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일반용도 및 규모	방염성능기준이상		다중이용업소	원칙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공영장, 당구장, 예식장, 초등학교, 수련시설, 여관, 여인숙, 주점영업, 다중 이용업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다중이용업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방염성능 기준이상		합칙 : 합 판 목 재 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영업장 천장과 면적의 3/10(스포팅클러 설치 시 5/10) 이하 방염성능 기준 이상 재료 사용
복도, 계단, 통로의 벽, 지하층 지하시설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 장업의 소파의자	-	방염성능 기준이상		

(2) 다중이용업소 대상의 기준성 필요

다중이용업소의 선정 대상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법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적용 되어지는 경우, 각각의 법령에서 명확한 내용의 기준과 범위의 설정이 요구된다. 예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제과점 영업·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을 이중적으로 적용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적인 혼란의 여지를 없게 하는 관련법의 구분적인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는 2개 이상의 관련 법령을 적용 받고 있으며, 영업신고나 허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각각의 규정에서 명확한 필요 공간의 범위와 재료사용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선정보다는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발생의 빈도, 위험발생 가능성 등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고려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공간 사용으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에 심각한 위험을 줄 요인 등을 도출·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지하층 사용의 경우는 위험성 정도를 감안하여 소규모(66㎡미만)업소라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불법 용도변경과 부실시공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

다중이용업소의 다수가 국민의 일상생활공간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실내건축보다 불법

10) 法庫, 消防法 第2章 第8條の2の4~第8條の3, www.houko.com

11) 한국소방검정공사, 방염제도에 관한 연구, p.153 재인용

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용도변경, 또한 검증되지 않은 시공업체에 의한 임의적인 시공을 하는 경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동일 업종이라 해도 사용공간의 위치·규모·수용인원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많은 혼란을 낳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적법한 계획과 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신고 또는 허가 시에는 감리자의 보고서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통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불법적인 용도변경이나 100㎡미만인 소규모의 용도변경인¹²⁾ 경우에는 실내건축 마감재료의 안전과 사용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추후의 유지관리상 실내공간의 안전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¹³⁾

따라서 불법적인 용도변경과 부실시공의 원인 제공자는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법적인 용도변경은 불법적인 행위자가, 설계상의 잘못은 설계자가, 시공상의 잘못은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책임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업무구분을 합리적으로 관계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4) 방염수명 및 유지관리 고려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천정과 벽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사용재료의 원칙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만을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설치 시 5/10) 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노래연습장영업 등에 이동성 가구인 소파, 의자를 방염대상물품에 추가하여 포함하고 있다.¹⁴⁾

하지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 위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방염도료 등에 의한 방염성능이 어느 기간 동안 효력을 지속하게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와 규정이 없으며, 한번 방염필증을 교부 받으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방염처리 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재 성능시험제를 도입하여 방염성능에 의한 실내건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다중이용업소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의 개선

(1) 실내마감 관련규정의 일원성 확보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실내마감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12) 김기철·김용성, 실내건축법규해설, 기문당, 2007, pp.57-63

13) 김용성, 건축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4권 제11호(통권241호), 2008.11, p.54

14) 김엽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재단정보학회, 2009.12, p.6

실내장식물에 대한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재료설치기준, 다중이용업의 범위, 실내장식물에 대한 규정 등이며, 이외의 주요 규정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에서의 비상구·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창문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으로 조사되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의 마감재료 적용기준이 유사한 구분체계를 가지면서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실내건축의 설치자와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스러움을 낳게 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빌딩코드(Building Code)의 사용으로 한 건축물에 각 분야의 일관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법체계가 일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내건축 마감재료의 설치기준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실내건축 마감재료의 설치기준에 관련한 법 규정 운용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법체계 운용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과 관련한 법규의 해석과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2) 실내건축 디자이너에 의한 관리감독 의무 부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시설공사 시에 반드시 설치 및 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¹⁵⁾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문, 영상음향차단장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중 비교적 순수 실내건축 시설범위에 해당하는 비상구 시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시설, 창문시설,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재와 방염처리 등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내건축 디자이너에게 시설을 검수하게 하며,¹⁶⁾ 이러한 시설 검수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허가·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방염대상의 완화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의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의 완화가 요구된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며,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사용을 완화하고 있다. 반면에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의무적인 설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2

16) 이주현·윤명오·김운형, 다중이용업소의 내장재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제15권 제1호, 2001.2, p.106

따라서 방화구획과 실내공간의 사용면적,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재료의 화재에 대한 안정에 대한 특성(화재시 급격한 연소의 확대 우려가 없는)과 재료의 두께, 재료의 사용면적 등을 고려한 실내마감재의 방염에 대한 완화 규정이 요구된다.¹⁷⁾

5. 결론

최근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소 출현과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 및 밀집화, 복합화, 지하화 등의 현상과 2007년 3월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물의 실내마감 관련규정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내건축업계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관련규정과 실내마감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내건축의 마감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다중이용업소의 선정기준의 문제, 방염의 수명에 따른 재방염의 문제, 다중이용업소 공사의 관리감독의 문제, 방염대상의 완화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며, 검토된 내용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마감 규정에 대한 관련법 정비

건축물의 실내마감 관련규정이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관련법의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내마감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실내건축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건축 마감재료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장식물은 건축물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물품과 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 선정

다중이용업소의 선정에 대한 기준적인 자료의 제시가 요구되며, 임의적인 직관적 판단과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발생의 빈도, 가능성, 위험적인 요인 등의 공간사용 위험의 다양한 평가방법 등의 기준자료 제시가 요구되며, 지하층 사용의 경우는 소규모 업소(66㎡ 미만)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방염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실내장식

물과 이동성 가구인 소파, 의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염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염필증 교부 후에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재 방염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하는 방염의 유지관리 성능제도가 요구된다.

넷째, 실내건축 디자이너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내건축 디자이너에게 실내건축의 시설행위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과 방염처리·비상구 시설·영업장 실내구조 시설·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의한 검사보고서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허가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방염대상의 완화

규제가 강한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해도 방염에 대한 완화규정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방화구획, 불연재료에 의한 일정한 바닥면적 마다의 실내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사용재의 안전에 관한 특성을 고려한 방염에 대하여 완화 규정이 요구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내마감재 사용과 비상구 설치, 영업장 피난통로 등은 실내건축 업무진행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실내건축행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실내건축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김기철·김용성, 실내건축법규해설, 기문당, 2007
2. RIBA, RIBA Chartered Practice Health and Safety Policy Template, May 2007
3. Ron Cote, Gregory E. Harrington, Life Safety Code Handbook,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Eleventh Edition), 2009
4. 김엽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2009.12
5. 김용성, 건축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4권 제11호(통권241호), 2008.11
6. 이주현·윤명오·김운형, 다중이용업소의 내장재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제15권 제1호, 2001.2
7. 정세진, 소방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인테리어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8. 조성오·김용성, 실내건축관련 소방규정과 방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3호 통권80호, 2010.06
9. 한국소방검정공사, 방염제도에 관한 연구, 2001.5
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건축관련 소방법규 가이드라인을 위한 조사 연구, 2010.12
11. 法庫, <http://www.houko.com>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3.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논문접수 : 2013. 08. 27]

[1차 심사 : 2013. 09. 17]

[2차 심사 : 2013. 09. 29]

[3차 심사 : 2013. 10. 10]

[게재확정 : 2013. 10. 11]

17) 정세진, 소방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인테리어 개선에 관한 연구, 2006, p.107